

야영장 화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최지훈* · 최돈묵**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설비 소방공학과 · **가천대학교 설비 소방공학과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of Camping Ground Fire

Ji-Hun Choi* · Don-Mook Choi**

*Dept.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 Fir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Gachon Univ.

**Dept. of Building Equipment System & Fire Engineering, Gachon Univ.

Abstract

The leisure life pattern of people is changing to a familial and enthusiastic way that eventually develops the camping culture. Thus, the number of campers and the size of camping market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due to significant expansion of camping people. However, many camp grounds and facilities are operating without a proper registration by government rule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many of electronic and gas equipment and tools are not used in a safe way and in a safety regulatory boundary. Therefore, campers at the camping ground is situated in a fire and safety hazard. In addition, there is limitation in rules and regulations associated with camping ground safety and fire. This study analyzed the fire and hazard guidelines and rules regul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of campground and compared them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is to develop a safety and fire hazard guidelines and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amp ground operation, gas and electronic equip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study will eventually reduce the future fire and safety incidents in a campground in South Korea.

Keywords : Camping Ground Fire, Campsite, Camping, Safety Measures

1. 서론

주 5일제 근무제 및 수업제 정착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더불어 여가문화 선진화로 야영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야영활동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야영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야영용품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30~4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오토캠핑과 편리하고 쾌적하며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글램핑과 카라반처럼 신종 야영활동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15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하

고 있는 전국의 캠핑장은 1,836곳이고, 캠핑산업 규모는 6,000억대를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 2,000억대에 비교하여 3년 만에 4배가량 증가하며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1],[2]

2012년 국민안전처 재난연감의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생활체육)사고 발생 추이에 따르면 야영인구와 시장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작년 대비 발생건수는 45.11%(1,355건), 인명피해는 30.44%(912명) 각각 증가하였다.[3]

† Corresponding Author : Prof. Don-Mook Choi,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461-701, E-mail : fire@gachon.ac.kr
Received January 20, 2016; Revision Received March 10, 2016; Accepted March 21, 2016.

<Table 1> Leisure (Sport) Accident Analysis

Division	Accidents	Casualties	Dead	Injured	Ratio of dead
2009	429	442	9	433	2.03
2010	282	235	3	217	1.28
2011	3,004	2,996	2	2,994	0.07
2012	4,359	3,908	31	3,877	0.79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텐트에서 난방기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밀폐된 텐트 내에서 화기사용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램핑 및 카라반의 경우 실내에 난방 및 취사 장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 화재와 질식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근래 이슈화 되면서 야영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던 2015년 3월 발생한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는 그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야영장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시설 정기 점검 및 안전종사자 교육 미실시 등과 같은 안전관리 부분에 미흡함이 들어났고, 신종 야영장인 글램핑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미국캠핑협회(American Camp Association)는 자체규정에 따라 캠핑장과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절차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캠핑협회 규정을 토대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주정부에서 캠핑장 안전관련 법에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캠핑협회, 독일관광협회 등 민간 협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운영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도 레크리에이션 관리법에 캠핑장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지정된 관리·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은 야영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 화재사고에 예방을 위한 기구를 정부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법에 시설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야영장 인·허가와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야영장의 안전관리와 여러 개별법에 따른 야영장 관리 측면에서의 미비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야영장 화재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2. 국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2.1 야영장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전국의 야영장은 약 1,836개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2016년 1월 기준).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국의 등록된 야영장은 1,048개소로 전체의 57.08%를 차지한다. 등록예정인 곳은 296개소로 16.12%를 차지하였으며, 야영장이 설치되는 입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개별법의 허가 조건에 따라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과 그 외 법률에 저촉되어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등록인 야영장은 496개소로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1]

<Table 2> Distribution Chart of National Camping Ground

Total	Registration	Registration Plan	Registration in trouble						An offense against the law
			Sub total	Farm land Act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National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Potential location	Impossible location	Potential location	
1,836	1,048	296	492	181	43	112	74	81	114

<Table 3> Camping Ground Type and Related Laws

Division	Related Laws	Major Contents	Competent Authorities
General · Auto Campground Business	Tourism Promotion Act	Tourist-use facility business 'General · Auto campground business' Regul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Youth camps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Type of Youth Activity Facilities 'Youth camps' regul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ational Park camping grounds	Natural Parks Act	Park facilities 'camping grounds' regul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al recreation forest camping ground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Natural recreation forest beneficial facility 'Woods camping ground' regulation	Korea Forest Service
Rural tourism and resort complex business or Tourist farm business camping grounds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Rural tourism and resort complex Business or Tourist Farm business or Other facilities 'Camping grounds' operat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musement park camping ground	Decisions of city and county planning facilities, structures and rules about the installed base	Amusement park Recreation facilities 'Camping Grounds' Regul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2 개별법에 따른 야영장 관리

국내의 야영장은 고유의 운영목적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Table 3>와 같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야영장업 등록기준 상 안전기준과 더불어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설치·안전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비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글램핑 등 신종 야영시설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국외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우리나라의 야영장 안전관리와 비교하여 야영장 산업 및 문화가 앞서 있는 선진국의 야영장 인·허가 제도 및 안전관리 체계를 조사하였다. 선진국들은 정부에서 법에 시설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야영장 인·허가와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용객들이 보다 변별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좋은 서비스 품질과 안전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미국

미국캠핑협회(American Camp Association)는 자체 규정에 따라 캠핑장 별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 및 등급을 부여하고 일부 주정부에서는 캠핑협회의 규정을 토대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규정은 라이선스 취득 여부, 범죄경력 조회, 캠핑장 직원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18개 항목을 인증기준으로 두고 있다. 캠핑장 운영자는 매년 지역보건책임자에게 미국캠핑협회 캠핑인증에 대해 서면확인을 받고, 관리자의 자격 및 교육, 직원의 기술검증 기준 및 프로세스, 직원당 참가자 관리 비율, 필요장비, 안전절차, 위차별 비상절차의 캠핑장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5]

3.2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주정부에서는 41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위 1등급부터 최상위 5등급으로 나누워 캠핑장 안전관련법에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운영기준과 절차에는 크게 프론트와 서비스영역, 위생영역, 캠핑카 자리영역으로 나뉘며, 캠핑장면적, 진입로 폭, 방화벽 설치, 방화벽에서 텐트 이격거리, 소화전 설치 여부, 식수·오수시설

설치, 캠핑장 안내도 표시정보, 캠핑장 규율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캠핑협회, 독일관광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운영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범위는 편의시설 및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규모, 캠핑면적,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유무, 도로상태 등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5가지로 등급화하고 있다.[6]

3.3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주정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분양 관리법(Recreation Areas Management Act)을 근거로 하여 위생,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환경안전, 보험 등 캠핑장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전기 안전 감시, 긴급대피 절차 수립·운영, 상하수도 오염감시 등 지정된 관리·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7]

4. 국내 야영장 사고 사례

4.1 양평군 캠핑장 텐트 화재

2015년 3월 14일 17시경 양평군에 위치한 캠핑장 내에 설치된 텐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였다.

신고인이 캠핑장 위쪽에 위치한 곳에서 폭발음을 듣고 가서 확인하여 보니 텐트 인근에 아이의 부모가 화재진압을 하고 있었으며 텐트는 전소 중이었다는 현장 진술이 나왔다. 소실된 텐트 내에서 석유난로 및 가스화로대 등의 물품이 소실되었으며, 텐트 주위에서 석유난로, 이소가스2통, 전선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증거물들의 감정결과에는 이소부탄캔 2통의 하부가 몸체로부터 분리 변형된 상태로 가스누출 확인이 어려우며, 멀티 콘센트 및 모니터, 전선 등의 전기적 특이점 또한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캠핑장 내에서 취사나 난방을 목적으로 화기 및 전열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명사고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본 사례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 화재에 취약한 텐트 주변에서 취사하기 및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열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 2) 텐트내부에서 발화된 불이 인근 잔디밭과 아산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가 확산되었듯이 야영장 주변에 소화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고 이러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4.2 강화도 캠핑장 텐트 화재

2015년 3월 22일 02시경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캠핑장내 설치된 PVC재질의 원뿔형 천막 텐트 안에 있는 난방용 전기장판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심야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인지가 늦어져 피해가 더 커졌으며, 텐트소재가 연소가 잘되는 PVC재질로 내부에는 가연성 물품이 많았고, 원뿔형 모양으로 화재전파 속도가 빨랐다. 화재현장에 소방기는 총 5대가 발견되었고, 1대는 텐트내부, 2대는 사용되어 빈 상태였고, 2대는 안전핀은 뽑혀 있었으나 방사되지 않은 상태였다. 화재 현장에서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장판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사고 원인과 관련,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더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사례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 대부분의 사설야영장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종사자의 교육이 미 실시 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다.
- 2) 신종 야영장인 글램핑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별다른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된다.
- 3) 텐트 내부 화재에 취약한 생활시설과 편의시설 및 전기, 가스 설치·사용에도 안전기준이 부재하다.[8]

5. 국내 야영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5.1 통일적·구체적 안전기준 부재

야영장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진입로, 사이트 당 면적기준 등 야영장에 대한 시설·안전기준이 상이하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시설의 종류, 규모, 설치위치 등에 대한 상세기준이 미흡하고, 안전시설의 관리·유지, 점검 등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다.

<Table 4> Decide of Camping Ground Individual Law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Division	Name	Subject	Installation Standards			Safety standards	
			Area	Essential facilities	Access road	Location standard	Safety Facilities · Regulation
Tourism Promotion Act	Camping ground	Private	(General) party tents 15m ² (Autocamp) party vehicle 50m ²	(General) sewer, Restroom (Autocamp) water and sewage, electricity, restroom, cooking	(General) Emergency lane secure (Autocamp) ≥1 lane road	Where no flooding · loss · isolated · Land slide · falling rocks	Emergency action tips, Fire extinguisher, Shelter, escape, Management personnel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Youth camps	Public, Private	≥ 2,000m ² (20m ² /1 person)	Self kitchens, Restroom, washroom	-	Flatland · Gentle slope, Drainage (Where no cliff · rapids · danger area and Flood · Disaster)	Relief facility · organ, Dike · Way, Shelter Danger signal, Management personnel,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mergency lighting · communication, safety inspection · Education
Natural Parks Act	Woods camping ground, auto camping ground	Public, Non-profit private	≥ 200,000m ²		-	Drainage, Where no Landslide, danger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ies, Emergency shelters, Tips for Emergency action, CCTV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Amusement park	Business	-	-	-	Where no Natural disaster	-
	Youth camps	Business	-	Road, Parking lot, water supply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Road width ≥ 8m (sidewalk, ≥10m)	Elevation ≤300m, slope ≤25°	Obey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Camping ground	Public	≤ 6,000m ²	-	-	-	-
Decisions of city and county planning facilities, structures and rules about the installed base	Tourist farm business	Public/Private	< 100,000m ²	-	-	-	-

5.2 신종 야영시설의 안전기준 부재

신종 야영장 중에서 모든 도구들과 시설이 준비된 글램핑과, 이동식과 정박식으로 구분되는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현재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별다른 관리 없이 야영장업 등록 이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내부에 화재에 취약한 생활시설과 편의시설 및 전기시설,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방, 방염, 전기, 가스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캠핑카와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 및 튜닝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장재 내인화성과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배치규정 정도만 존재하고 있다.

5.3 안전수준 평가 및 정보제공 부재

야영장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가격과 위치, 등록여부, 편의시설에 대한 단순 이용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야영장 안전관리 정보획득이 어렵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로 인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추동에 한계가 따른다.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을 알지 못하거나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천이나 산지 등에 위치한 야영장의 경우에는 재난위험성에 대한 확인절차가 부재하여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한다.

5.4 미등록 야영장의 제도권 편입 지연

합법적으로 조성된 부지에 한하여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다수가 부지관련 인·허가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야영장의 위치 특성상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부지가 거의 대다수인데, 산지법 및 농지법 등에 저촉되어 원상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야영장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비용 납부 후 인허가를 득한 뒤 시설을 재설치해야 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커서 등록이 저조한 상황이다.

5.5 현장 안전관리 미흡 및 야영문화 미정착

야영장 등록 이후 등록기준 유지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등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사업자의 부담감이 커지고 각 야영장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야영장 외에는 대부분 보험을 미가입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고, 사고 보고체계가 없어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제도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이용자의 부주의한 화기 취급과 금지 물품 반입 및 사용, 쓰레기 투기 등의 이용행태로 인한 문제점 해소가 곤란하다.

6. 야영장 안전관리 방안

6.1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재정비

2013년 10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야영장의 종류별로 다루고 있던 개별법을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이라는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9] 법령 개정 전까지 운영자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세기준이 미흡하고, 의무성을 띄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야영장의 안전시설 종류와 수치적 안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안전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및 교육 등과 같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 신종 야영장의 안전기준 신설

개인 텐트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난방, 취사, 전기, 가스 등의 사용이 빈번한 특성을 가진 글램핑과 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장의 정의 및 종류, 형태, 구조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야영장 안전관리의 혼선을 제거 하고, 신종 야영장을 포함시킨 안전기준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글램핑, 카라반뿐만 아니라 변종·복합 유형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적 시설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6.3 야영장 안전 등급제를 통한 안전등급 평가 및 활용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조사한 결과 미국, 독일, 호주 모두 유사한 등급평가기준과 상세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 위생등과 같은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와 관계된 항목은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운영자의 자율적 평가 참여, 등급 평가 및 인증제 운영 및

결과 공개 절차가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운영 중심의 등급제도 시행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정부에서 상위법 상에 인·허가 조건으로 캠핑장 등급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관계법을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캠핑장 운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캠핑장 사업 등록부터 안전관리까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운영자가 캠핑장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조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 등에서 안전 관련 상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0]

야영자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험가입 현황, 안전시설 현황, 안전인증 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이수 현황,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고, 안전법령 준수여부와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야영장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6.4 야영장 등록 활성화

전국 약 1,986개소에서 운영 중인 야영장 가운데 등록이 완료된 야영장은 339개소, 17.0%로써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은 대부분 입지제한이 주된 사유로 추정되는데, 야영장의 위치 특성상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부지가 다수로, 산지 및 농지법 등에 저촉되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산지의 위법정도에 따라 전용허가, 원상회복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유도해야 하며, 관광공사, 캠핑협회, 민간캠핑사이트 등 관련 웹사이트에 시설자금 저리 융자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 야영장 이용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산지법 위반 등에 대한 개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재 조치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초기 원활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6.5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6.5.1 야영장 방범조치 및 자체 안전점검 의무화

주요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 불가능 지역은 야영장 안전사고, 범죄, 도난의 예방을 위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야영장

내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반기별 등록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6.5.2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특별 점검 실시

관할 지자체 및 관리감독 기관 주도하에 안전점검·조치, 제도개선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지정하여 특별 안전점검과 재난·사고 원인분석 결과 등을 통한 테마별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6.5.3 재난 대비체계 구축 및 대응 강화

성수기에는 지자체별 야영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재난피해 파악 및 복구지원을 위한 Hot-Line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공유와 각 기관 및 지자체, 운영자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6.5.4 등록 야영장 관할 소방서 통보 제도

야영장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정보를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재해위험·사고 시 소방관서의 이용자 철수 및 신속한 구조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관청과 관할 소방관서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6.6 야영장 안전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 신속 대응 및 적시에 조치하도록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안전 관리자는 야영장 내 각종 주의·금지 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해 야영장 이용 제한 조치토록 규정하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야영장 화재사고를 국내·외 야영장의 안전관리 현황, 사고 사례, 문제점, 안전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연구해 보았다. 야영장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준에 마련된 야영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법적 의무성을 강화하여 체계

- 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 2) 신중 야영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의 혼선을 제거하고, 신중 야영장을 포함시킨 안전기준을 범용적 범주로 설정하여 변종·복합 유형의 야영장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 3) 야영장 등급제가 잘 도입 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등급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 4) 야영장 등록제에 대한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등록이 곤란한 많은 사유 중에 입지제한이 가장 큰 문제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운영자 및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민간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높은 서비스를 통한 이용객 유치에 위해 등록을 필수화하고 안전관리에 노력해야한다.
 - 5)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 화재 사고는 운영자 및 안전관리자의 철저하지 못한 관리로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재난 발생 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6) 화재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운영자 또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야영장을 만들어야 한다.

5.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5), “Fixed tent (Glam Ping) Safety Standard
- [2] The Korea Agency of Camping & Outdoor Industry,(2013), “Camping market growth and Improvement Seminar” , pp 20-23.
- [3]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2), Disaster Year Book, pp 290-299
- [4]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Camping Ground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tandard”
- [5] ACA(American Camp Association), “ ACA Standards at a Glance, 2012 Edition” (2014)
- [6] BVCD/DTV(Bundesverband der Campingwirtschaft in Deutschland E.V / Deutscher Tourismusverband E.V),(2015), “Erlauterungen zur Anwendung des Bewertungs”
- [7] State of Queensland,(2015), “Recreation Areas Management Act 2006”
- [8] KBS, (2015),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발화점 전기패널 미인증 제품”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51262>
- [9]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3), “Camping Ground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tandard”
- [10] So-Soon Park, Keum-ho Oh(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y Direction for safe Camping Ground Activities” ,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5: 25-35

저 자 소 개

최지훈



가천대학교 동 대학원 소방방재공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화재, 폭발 및 감식기법 연구 등이다.

최돈목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에서 연구객원 교수로 연구 및 교육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화재조사(감식 및 감정),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화약제의 소화성능 등이다.